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1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	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29.

다.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구 기준)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철도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

현 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 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을 말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³⁾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⁴⁾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⁵⁾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⁶⁾에 따라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철원군, 고양시, 춘천시 등

4)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都市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같은 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고 있음.

* 광역철도 지정요건

① 시·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②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고, 권역별 중심 지점**으로부터 40km 이내 일 것

③ 표정속도 50km/h 이상(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경우는 40km/h 이상) 일 것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

15곳을 말함.

접경지역 중 광역시에 속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3개 접경지역 중 2024년 1월 기준 인구 50만명 이상⁷⁾인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3곳이 해당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 접경지역 및 개정안 해당 지역 >

구분	접경지역 해당 시·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024. 1. 29. 관보 기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김포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도: 춘천시	고양시
비무장지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자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대한민국관보 제20677호(2024. 1. 29.)

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도: 춘천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 7)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외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포함됨.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 및 긴장 등 정치·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여러 규제로 토지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동 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그럼에도 접경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의 도로보급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최하위이며,⁹⁾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를 감안했을 때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도로보급률을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¹⁰⁾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충분한 SOC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참고: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10) 2021년 기준 도로보급률을 비교하면 경기 남부는 1.37, 경기 북부는 1.09임.(참고: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추진과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음.¹¹⁾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범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1)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11. 23.)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면제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둘째,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

(단위: 억원)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조사결과 (면제사유)
2019	울산외곽순환도로	9,865 (4,427)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조사결과 (면제사유)
	서남해안 관광도로	9,542 (9,542)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비R&D포함)	4,061 (2,843)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국도 위험구간 등	8,950 (8,95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	8,613 (8,613)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충북선 철도고속화 (청주공항~제천)	14,518 (14,518)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석문산단 인입철도	9,380 (9,38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세종~청주 고속도로	8,013 (3,902)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4,450 (4,45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46,562 (46,562)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대구산업선 철도 (서대구~대구국가산단)	11,072 (11,072)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2,333 (2,333)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251 (3,30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새만금 국제공항	7,534 (5,35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R&D)	1,930 (1,095)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00 (70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3,886 (954)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도봉산 포천선 (옥정~포천)	10,391 (7,274)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영종~신도 평화도로	1,000 (70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평택~오송 복복선화	30,904 (15,452)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019 (9,737)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조사결과 (면제사유)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9,600 (6,72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균형발전)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5,723 (10,569)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소부장)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855 (600)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소부장)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2,637 (1,997)	제10호 국가정책적추진사업 (소부장)
202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100 (15,10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코로나)
	그린스마트 스쿨	43,615 (13,085)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뉴딜)
	전선지중화	20,000 (4,00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뉴딜)
	스마트 하수도관리 체계 구축·운영	3,642 (2,417)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뉴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8,506 (8,506)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코로나)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539 (10,53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코로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1,000 (1,00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코로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6,630 (96,63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코로나)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5,918 (2,367)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디지털뉴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6,634 (5,99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디지털뉴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1,200 (1,20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디지털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830 (3,98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그린뉴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7,454 (8,81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그린뉴딜)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356 (707)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그린뉴딜)
	스마트 생태공장 육성	1,677 (1,01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그린뉴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7,050 (3,525)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그린뉴딜)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조사결과 (면제사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000 (1,00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K-방역)
202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3,003 (1,36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2,087 (1,142)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	1,326 (431)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2,187 (617)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202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137,584 (137,584)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2023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	3,074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2027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개최	5,812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7,892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부체제 구축사업	6,161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9,314	제10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인항 건설사업	25,768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접경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신설은 그 외 접경지역, 도서, 농산어촌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 파급 가능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u>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을 말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